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수 산 종 자 산 업 육 성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과태료의 금액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기존 위반행위의 5백만원 이하 단일 과태료에서 위반행위별 1천만원 이하로 과태료 금액 세분화를 반영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20.2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과원·지자체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을 재정비하고, 수과원에 위임한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관별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 재정비(안 제19조제1항·제3항)

- 기존 10개 위반행위를 5백만원 이하의 단일 과태료에서 위반행위별 1천만원 이하로 세분화에 따른 기관별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 재정비

* 수과원 : 4개 위반행위(5백만원↓) → 2개(1천만원↓)+2개(5백만원↓)

** 지자체 : 6개 위반행위(5백만원↓) → 2개(1천만원↓)+4개(5백만원↓)

나.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 정비(안 제19조제4항 신설)

- 수과원에 위임한 수산종자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위탁 근거를 마련

* 위임기관(수과원)+위임사무 규정 삭제 → 위탁기관(수산업 관련 법인·단체)+위탁사무 규정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3.06.20.~07.31.)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법 제43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법 제43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제5호·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를 “법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해 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u>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u> <u>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u> <u>태조사</u> <u>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u> <u>출 요청</u> 3. ~ 16. (생 략) 17. <u>법 제43조제1항제7호부터</u> <u>제10호까지의 규정</u> 에 따른 과 태료의 부과·징수 ② (생 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u>법 제43조제1항제</u> <u>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u> 에 따 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 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위임한다. <u><신 설></u>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 ----- -----. <u><삭 제></u> <u><삭 제></u> 3. ~ 16. (현행과 같음) 17. <u>법 제43조제1항제3호·제4</u> <u>호 및 제2항제5호·제6호</u>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법 제43조제1항제1</u> <u>호·제2호 및 제2항제1호부터</u> <u>제4호</u> ----- ----- -----. <u>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u> <u>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u> <u>한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u> <u>수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u>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산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연 락 처	(044) 200 - 5683